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05월 21일

화산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진	이 *진 1995-04-19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(안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5-09